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2. 12. .

제 출 자 : 김기석의원외3인

1. 제안이유

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 해양수산담당관실을 해양수산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국 산하로 직제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해양 수산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개정안으로 동 조항에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과를 지역개발국 산하로 조정하기 위하여 동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해양수산과를 지역개발국 산하로 조정함.

3. 수정안 1부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담당관·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기획감사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, 해양수산담당관, 총무국, 지역개발국</u> 을 둔다	제3조(담당관·국의설치)----- ----- ---- <u>기획감사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, 총무국, 지역개발국</u> 을 둔다.	제3조(담당관·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기획감사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, 총무국, 지역개발국</u> 을 둔다
<u>제6조(해양수산담당관) 해양수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 <u>1. 해양수산행정의 종합 기획·조정</u> <u>2. 수산 중·양식사업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리</u> <u>3. 불법어업 방지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</u> <u>4. 해양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업무</u>	〈 삭제 〉	〈 삭제 〉
제7조(총무국) ①총무국에 총무과, 세무과, 회계과, 사회복지과, 민원정보과, <u>환경보호과, 주민자치과</u> 를 둔다.	제7조(총무국) ①총무국에 총무과, 세무과, 회계과, 사회복지과, 민원정보과, <u>환경보호과, 해양수산과, 주민자치과</u> 를 둔다.	제7조(총무국) ①총무국에 총무과, 세무과, 회계과, 사회복지과, 민원정보과, <u>환경보호과, 주민자치과</u> 를 둔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②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(생략) 6. (생략) <신설> 7.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(지역개발국)①지역개발국에 지역경제과, 건설과, 도시건축과, 교통관광과, 지적과, 상하수도과, 녹지공원과를 둔다. ②지역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. 1. (현행과 같음) 2. (") 3. (") 4. (") 5. (") 6. (") 7. 수산 증·양식사업 등 해양수산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8.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	②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6. (현행과 같음) 7.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(지역개발국)①지역개발국에 지역경제과, 해양수산과, 건설과, 도시건축과, 교통관광과, 지적과, 상하수도과, 녹지공원과를 둔다. ②지역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1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2. (생략)</u> <u>3. (생략)</u> <u>4. (생략)</u> <u>5. (생략)</u> <u>6. (생략)</u> <u>7. (생략)</u> <u>8. (생략)</u> <u>9. (생략)</u>		1. (현행과 같음) <u>2. 수산 증·양식사업 등 해양 수산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</u> <u>3. (현행과 같음)</u> <u>4. (현행과 같음)</u> <u>5. (현행과 같음)</u> <u>6. (현행과 같음)</u> <u>7. (현행과 같음)</u> <u>8. (현행과 같음)</u> <u>9. (현행과 같음)</u> <u>10. (현행과 같음)</u>
부 칙(제493호)	부 칙(제493호)	부 칙(제493호)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①(시행일)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	①(시행일)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②(유효기간) 제7조 중 주민자치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	②(한시기구) 제7조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	②(한시기구) 제7조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설>	<u>부칙</u>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규의 개정)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제2호중 “충무국, 120기동대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”를 “충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”로 하고, 동조 동항 제3호중 “해양수산담당관, 지역개발국,”을 “지역개발국,”으로 한다.	<u>부칙</u>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규의 개정)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제2호중 “충무국, 120기동대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”를 “충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”로 하고, 동조 동항 제3호 중 “해양수산담당관, 지역개발국”을 “지역개발국”으로 한다.